

의안번호	제 31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필용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6 일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6

개정이유

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 위촉기능을 운영기능으로 변경하고,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수를 확대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조례의 제명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로 함.

나. 감사위원회의 목적 변경(안 제1조)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협조하고 청렴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감사위원회의 기능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함.
- 제2조(기능)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한다.
 1.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4. 부패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요구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관의 각종 감사 참여와 협조

라. 감사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안 제3조)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함.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
 2. 충청북도 의원: 2명 이내
 3. 도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마.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변경 및 도의원 임기규정(안 제4조)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함.
-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바. 위원장 사고시 대행자 규정(안 제5조)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함.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사. 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8조)

-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함.
-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1)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쓰기로 함.

2) “제○조의 규정에 의한/의하여”를 “제○조에 따른/따라”로 함.

- “~에 의한/의하여”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에 따른/따라”로 바꾸고, “제○조의 규정”에서 ‘의 규정’은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함.

3) 그 밖에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수정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감사관실)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협조하고 청렴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한다.

1.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4. 부패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요구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관의 각종 감사 참여와 협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을 “15명 이내”로 “비상근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4인”을 “10명 이내”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2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 ④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중 “그 의장이 된다”를 “주재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보고) 간사는 운영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협조하고 청렴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u>	<u>제2조(기능)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한다.</u>
<u>1.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u>	<u>1.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u>
<u>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u>	<u>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u>
<u>3. 부패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3.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u>
<u>4.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u>	<u>4. 부패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5.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u>
	<u>6.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요구시 충청북도 이하 “도”라 한다) 주관의 각종 감사 참여와 협조</u>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u>7인의 비상근위원으로</u>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u>15명 이내의 위원으로</u>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 <u>4인</u></p> <p>2. 도의회 의원 : <u>1인</u></p> <p>3.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 <u>2인</u></p>	<p>1.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u>10명이내</u></p> <p>2. 충청북도의회 의원 : <u>2명이내</u></p> <p>3. 도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 <u>3명이내</u></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연</u>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연</u>으로 하되, <u>두 번만</u> 연임할 수 있다.</p>
<p>②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조제 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p>
<p>④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p>	<p>④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p>

<p><u>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 1인</u>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9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u>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u>주재한다.</u>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의견청취 등) <u>위원회는 회의와</u>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1명</u>을 <u>간사로 둔다.</u>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9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	---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을 각각 <u>1월 이내에</u>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보고) 간사는 운영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